

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

#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3. 1. 17-----사하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03. 1. 17

다. 상정일자 : 제 109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1차 총무위원회(2003. 1. 22) 상정, 수정가결

## 2. 제안설명요지(최삼립 주민자치과장)

### 가. 제안사유

- 주민자치센터의 자치기능 확대 및 자치센터 운영재원의 동 자체 확보능력을 도모하고
- 자원봉사자 등 민간인의 자치센터 운영참여 유도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요건 개선 등으로 자율성 제고 및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자치센터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

### 나. 주요골자

#### [주민자치센터 운영]

- 주민자치센터 명칭 일원화
- 지역사회진흥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의 우선적 수행
-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구의 지원체계 강화
- 주민자치센터운영 사무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분담, 주민자치센터 수탁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등
- 사용료 등의 징수·관리체계 개선
-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

### [주민자치위원회 구성·운영]

- 위원회에 일부 의결·집행기능 부여, 자치기능 수행 관련 토론험대등
- 고문제도, 위원위촉 절차, 위원장 자격요건, 위원 주요 인적사항공개 등
-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
- 위원 등의 임기단축으로 주민참여기회 확대
- 위원의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 의무화
- 위원 해촉요건 강화 및 해촉시 위원회 심의
- 현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보장(부칙)

### 3. 관련법규

-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
- 사하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(전반)

### 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「동 기능전환 확대시행지침」 및 「2단계 읍,면,동 기능전환 추진지침」 중 일부내용을 보완하는 지침의 일환으로 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”를 준칙으로 시달된 내용을 구실정에 맞게 적용하려는 사항으로
  
- 기존 조례를 전면적으로 수정보완 또는 조항신설을 한바(전부개정) 주요내용을 보면 자치센터 명칭 단일화(제2조), 자치센터 기능의 다양화(제5조), 자원봉사자에게 활동비 지급근거마련(제7조3항), 센터 운영자에게

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수정안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1장 총 칙</b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 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 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“주민자치센터”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·복지·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.</p> <p>2.“단체”란 관할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목적의 각종 직능·자생단체, 취미·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을 말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----</p> <p>제2조(정의)</p> <p>1.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 각종 민간단체, 직능·자생단체 ----</p>	<p>제1조(목적)</p> <p>1. ----- 에 의거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과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</p> <p>2.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, 운용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,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</p> <p>제2조(정의)</p> <p>1. -----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-----</p> <p>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한 중심적기능을 총칭한다</p> <p>2. “ ----- 민간단체”란 ----- 각종직능 취미 동호회등 주민이 조직한 자생단체를 말한다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5조(기능)①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·복지·편익기능 및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각 호와 같다.</p> <p>1.지역문화 행사, 취미교실,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</p> <p>2.평생교육, 교양강좌,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</p> <p>(신설)</p> <p>3.회의장, 알뜰매장,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</p> <p>4.내집앞 청소하기, 불우이웃돕기,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</p> <p>5.지역문제에 대한 토론, 건의 등 주민자치 기능</p>	<p>제5조(기능) ①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·복지·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지역문제 토론,마을환경가꾸기,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</p> <p>2.지역문화행사, 전시회,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</p> <p>3.건강증진, 마을문고,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</p> <p>4.(현행 제3호와 같음)</p> <p>5.(현행 제2호와 같음)</p> <p>6.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	<p>제5조(기능) ①.</p> <p>1. ----- 자율봉사활동-----</p> <p>2.지역문화예술행사등 예술적여가선용기능</p> <p>3.건강증진,마을문고,청소년공부방 등 지역주민복지기능</p>
<p>제7조(운영) ①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운영(이하 “자치센터의 운영”이라 한다)은 동장이 한다.</p>	<p>제7조(운영) ①(현행과 같음)</p>	<p>제7조(운영)①자치센터의 시설은 동장이 하고 프로그램 운영(이하 “자치센터의 운영”이라 한다)은 동장과 위원회가 협의 결정한다.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17조(구성등) ①위원은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.</p>	<p>제17조(구성등)①----- ----- ---25인 이내로 구성하되, 3인 이내의 <u>고문을 별도로 들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등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고문이 될 수 있다.</u></p> <p>② 1. -----주민자치위원회 -----</p>	<p>제17조(구성등)①----- ----- ---25인 이내로서 <u>65세이하로</u> 구성하되,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들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등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.</p> <p>② 1. -----위원회-----</p>
	<p>별표 사용료등 기준(제10조 관련)</p> <p>1회 1시간</p> <p>기타</p>	<p>별표 사용료등 기준(제10조②③ 관련)</p> <p>1회 1시간당</p> <p>기타요금 <u>사용료감면</u></p>